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# 연수구보



구정방향  
함께 가꿔요!  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07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725호 2012. 12. 17.(월)

### 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91호(도로명주소 고시) ..... 1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92호(도로명주소 고시) ..... 2

### 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901호(인천광역시연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) ..... 3

회							
람							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2. 17.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5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-12, 11-105번지	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5	신축	2009-05-14	첨단기술단지내 를 지나는 도로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 ~ 79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2.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2. 17.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36번길 37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-75번지	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36번길 37	미부여	2009-05-1 4	벤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2. 1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

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2년 12월 14일  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### 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 규모	보육 정원	개원 일자	위탁 기간	비고
여성의광장 어린이집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 (여성의광장 청사 1층)	대지: 136㎡ 건물: 423.9㎡ (지상1층)	78명	2004.6.23	2010.2.22 ~ 2013.2.21	장애아 통합

2. 위탁운영기간 :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

3. 위탁운영신청자 자격 요건

#### ○ 공통사항

-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, 개인으로서 보육사업(아동복지사업)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
- 법인·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

## ○ 법인·단체일 경우

-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(또는 단체)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
-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, 보육사업,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
-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(교)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(교)

## ○ 개인일 경우

-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## 4. 신청제외대상

-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
-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- 법인·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(위탁체 정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)
-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**공고개시일 현재까지**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(단, 고용된 원장이거나 본 여성의광장 어린이집 위탁기간 까지 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신청 가능)
- 타인(법인, 단체 포함)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

## 5. 위탁 운영 조건

- 위탁범위 :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- 운영재원 :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등
- 종사자 보수 :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
- 보 육 료 :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
- 취약보육(영아, **장애아**, 시간연장 등) 분야 2개이상 운영(**장애아 필수**)
-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.

-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
-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
-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
  - 원장 65세,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
  -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 인건비 지원 중단
-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(보육료 등)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
-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,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,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,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.

## 6. 신청서 접수

- **공고기간 : 2012. 12. 14 ~ 2012. 12. 27 (14일간)**
- **접수기간 : 2012. 12. 27 ~ 2013. 1. 2 (7일간)**
- 접수장소 :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(6층)
-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(09:00~18:00)
  - ※ 공휴일 접수 및 우편·인터넷·대리접수 불가
- 신청자 :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(신분증 지참)
- 선정심의일 : 별도 통지

## 7. 제출서류

서 류 항 목	운 영 체			비 고
	법인	단체	개인	
1. 어린이집 위탁신청서	0	0	0	
2.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-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-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- 시설운영 및 관리·평가에 관한 계획 등 - 2013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등	0	0	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영유아의 신체, 정서, 언어, 사회성 및 인지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</li> <li>◦ 취약보육계획 2개이상 포함(장애아 필수)</li> </ul>
3. 재정상태 및 요약서	0	0	0	
4.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	0	0	0	
5.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	0	0		
6. 법인정관,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	0			
7.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0		
8.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0	0		
9. 2011년, 2012년 법인(단체) 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서	0	0		
10. 2011년, 2012년 법인(단체) 총괄예산 결산서	0	0		
11. 이력서(증명사진) 및 자기소개서	0	0	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</li> </ul>
12. 자격증사본(원본지참)	0	0	0	
13. 졸업증명서(최종학교, 관련학과)	0	0	0	
14. 경력증명서(보육 및 아동복지관련)	0	0	0	
15. 채용신체검사서	0	0	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법인, 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</li> </ul>
16. 인감증명서 (법인, 단체의 경우 법인, 단체의 인감)	0	0	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용도 : 어린이집 위탁 신청용</li> </ul>
17. 주민등록등본	0	0	0	

서 류 항 목	제출대상			비 고
	법인	단체	개인	
18. 건물(등기부 등본-공통) - 아파트, 다세대, 연립 :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- 단독주택 : 주택가격확인원 - 상가, 기타 : 세목별납세증명서(비고란 과표 기록)	0	0	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재산입증자료는 공고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</li> <li>◦ 개인(부부 재산)</li> <li>◦ 법인(법인명의 재산)</li> <li>◦ 단체(단체명의 재산)</li> </ul>
19. 토지 : 공시지가확인원	0	0	0	
20. 금융재산 - 예금잔액증명서(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) - 부채증명서(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)	0	0	0	
21. 기타 자격증(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유치원정교사)	0	0	0	◦ 해당자만 제출
22.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, 교육 등 증빙서류 (평가인증 참여확인서, 표창장, 자원봉사,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	0	0	0	

※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연수구청홈페이지(<http://www.yeonsu.go.kr>) 고시/공고란 참조

※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

※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6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15부 제출 / 목차·쪽수 명시)

## 8.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

○ 심사기준 :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적용(변경위탁)

-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

-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
-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

평가항목	계	어린이집 운영계획	운영체대표 및원장 전문성	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	운영체의 공신력	운영체의 재정능력
배점	100	40	35	10	10	5

○ 선정방법

-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(대표자, 원장 내정자) 심의 후 결정하며,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다도 신청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
-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(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)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단수(한명 또는 한개 법인·단체)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.
-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원장의 전문성, 어린이집 운영계획,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※ 면접방법

-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(발표 및 응답자)가 함께 출석하여 10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되 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·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위임을 받은 자(위임장 지참)의 대리참석 가능(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·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)

○ 선정결과 통보

- 위탁자(체) 선정 익일 개별 통지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시

9. 유의사항

-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
※ 지정된 기일까지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,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

-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, 사업설명회(현장 설명회)를 별도

로 개최하지 않으므로,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,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- 신청자는 심의일(별도통지)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(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).
-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·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
-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10. 기타 사항은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담당자(☎ 032-749-6921~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